

의안번호	2205220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4. 9. 5.
추계번호	24C2650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장애영향평가,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아동 돌봄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566억원(연평균 11억 1,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운영(안 제3조·제6조)	37	38	38	39	40	192	38
장애영향평가 실시(안 제11조)	10	10	10	10	10	52	10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40조)	8	—	—	—	—	8	2
장애아동 돌봄지원(안 제105조)	894	971	1,055	1,147	1,246	5,313	1,063
추가재정소요	950	1,019	1,104	1,196	1,296	5,566	1,11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6조(사무처)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11조(장애인정책 및 예산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요구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9조(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정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20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국가는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밀투표, 물리 및 정보 접근성 보장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21조(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국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적,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의 참여, 장애인단체의 결성과 가입 등을 보장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23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제2항) 국가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어 지원, 문자통역 지원, 점역 지원, 화면해설 지원, 읽기 쉬운 자료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3항) 국가는 장애인이 디지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5조(사법접근성의 보장)	국가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장애인화적인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26조(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국가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모든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7조(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생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33조(훈련 및 재활의 보장)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 및 확대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34조(통계와 자료 수집)	(제1항) 국가는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분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35조(다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다중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등에 기초한 정책 개발, 예산 편성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36조(소수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빈도가 낮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17	안 제40조(지역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44조(장애 관련 연구의 진흥 등)	(제2항) 국가는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연구원을 설립함 (제4항) 국가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세산의 특례를 적용함 (제5항) 국가는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제2항·제4항) 의무규정 (제5항) 재량규정
19	안 제46조(장애인권리 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함	의무규정
20	안 제51조(긴급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21	안 제52조(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현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장애인학대 예방 ※ 안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 등에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명시	의무규정
22	안 제65조(평가 및 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율성 등에 관하여 평가·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72조(피해장애인 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과 성인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현행 피해장애인 쉼터의 역할: 학대피해장애인 보호	의무규정
24	안 제74조(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희망하거나 자립이 필요한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사후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지원 및 비용 지급 3. 자립을 위한 생활·소득·교육·취업·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지원 4. 제84조에 따른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지원 5. 제85조에 따른 지원주택의 이용 6. 자립에 필요한 주거 제공 7.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및 조치 8.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25	안 제75조(장애인권리 침해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26	안 제79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과 홍보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함	의무규정
27	안 제82조(장애서비스 지원의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83조(개인별지원 계획에 따른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그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의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9	안 제84조(적절한 경제 생활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소득보장 관련 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특성 및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소득보장 제도, 자산형성지원 제도, 세제상의 조치, 할인 및 감면제도 등을 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30	안 제85조(적절한 주거 생활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하여, 공공임대 주택 공급, 주택임대료 지원, 주거수당 지급, 주택개조 비용 지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주택지원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서비스, 대안적 주거모형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1	안 제86조(노동권 보장)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한 별도의 공공 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32	안 제87조(자립생활 권리 보장)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 이동지원, 평생교육지원, 주택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탈시설지원, 동료상담 및 동료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33	안 제88조(건강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34	안 제90조(안전대책의 강구 등)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사고 또는 비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4항) 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제5항) 국방부장관은 전쟁, 국지전, 생화학테러 등의 전시 상황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5	안 제91조(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장애인, 경찰청의 실종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된 장애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인 무연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함 (제2항)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종자 발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종장애인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36	안 제93조(교육권 보장)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치를 제한하여야 함 (제4항) 교육부장관은 장애아동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의 언어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를 지난 중증장애 성인이 교육과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과정에 제83조에 따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연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규정
37	안 제94조(참정권 보장)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작된 선거 관련 안내자료 등을 배포하여야 하며, 선거 참여에 필요한 인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력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38	안 제95조(이동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지원, 대중교통수단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이동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거주지와 장애서비스 또는 장애인 권리옹호 지원 등을 제공받는 장소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9	안 제96조(정보접근 권리 보장)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서비스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함 (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8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제작할 때 장애인이 직접 혹은 호환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함	의무규정
40	안 제97조(방송 접근권 보장)	(제1항)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고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2항)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의 업무 이외에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및 방영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41	안 제98조(의사소통 권리 보장)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어, 문자표기, 점자, 확대문자 이용가능한 멀티미디어 및 필기,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화면해설 지원, 구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의사소통의 수단 및 소통을 보조하는 제공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이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의무규정
42	안 제99조(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장애인의 관람·참여·향유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활동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환경 개선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3	안 제100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1항·제2항·제4항) 의무규정 (제3항) 재량규정
44	안 제101조(체육활동 권리 보장)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처방 또는 소견에 따른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발굴·육성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인 발굴·육성 지원, 전문 체육인 과정 훈련 지원, 국내외 대회 참여 지원 등 장애인 체육인의 전문성 향상과 훈련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제1항) 재량규정 (제2항·제3항) 의무규정
45	안 제103조(장애인의 재생산권리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확보할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철폐하여야 하고, 성교육 접근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시기와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 피임에 대한 접근권과 결정권, 양육·입양을 위한 정보와 사회적 자원의 제공 등 재생산 권리 전반을 보장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의무규정
46	안 제104조(고령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야 함	의무규정
47	안 제105조(돌봄·주간 활동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돌봄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낮시간 동안의 보호 및 활동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장애인위원회)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6조(사무처)	○	
3	안 제11조(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조치 등)	○	
4	안 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6	안 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	
7	안 제19조(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	×	
8	안 제20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	
9	안 제21조(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	
10	안 제23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	
11	안 제25조(사법접근성의 보장)	×	
12	안 제26조(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 부터의 보호)	×	
13	안 제27조(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	
14	안 제33조(훈련 및 재활의 보장)	×	
15	안 제34조(통계와 자료 수집)	×	
16	안 제35조(다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	
17	안 제36조(소수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18	안 제40조(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9	안 제44조(장애 관련 연구의 진흥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0	안 제46조(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	
21	안 제51조(긴급전화)	×	
22	안 제5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23	안 제65조(평가 및 심의)	×	
24	안 제72조(피해장애인 쉼터)	×	
25	안 제74조(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등)	×	
26	안 제75조(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	×	
27	안 제79조(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등)	×	
28	안 제82조(장애서비스 지원의 원칙)	×	
29	안 제83조(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장애 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	
30	안 제84조(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1	안 제85조(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2	안 제86조(노동권 보장)	×	
33	안 제87조(자립생활 권리 보장)	×	
34	안 제88조(건강권 보장)	×	
35	안 제90조(안전대책의 강구 등)	×	
36	안 제91조(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	
37	안 제93조(교육권 보장)	×	
38	안 제94조(참정권 보장)	×	
39	안 제95조(이동권 보장)	×	
40	안 제96조(정보접근 권리 보장)	×	
41	안 제97조(방송 접근권 보장)	×	
42	안 제98조(의사소통 권리 보장)	×	
43	안 제99조(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등)	×	
44	안 제100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	
45	안 제101조(체육활동 권리 보장)	×	
46	안 제103조(장애인의 재생산권리 등)	×	
47	안 제104조(고령장애인 지원)	×	
48	안 제105조(돌봄·주간활동지원)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일부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 제2조는 제정안 시행 당시 또는 시행 후 종전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를 동 제정안의 관련 조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유사 조항이 있는 경우 추계 대 상에서 제외

[표 2] 제정안과 현행 「장애인복지법」 유사 조항(1)

제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
안 제7조(지역장애인위원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안 제9조(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권주간)	제14조(장애인의 날)
안 제38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 제39조(장애인정책책임관제도의 운영)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안 제43조(장애인단체의 지원)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안 제80조(방송 편성 등)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안 제106조(장애인 가족지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및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안 제13조~제33조, 제35조~제36조, 제84조~제88조, 제92조~제101조, 제103조 등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추계가 곤란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조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것으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조항에 규정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 제정안과 현행 「장애인복지법」 유사 조항(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현행 주요 사업(2024년 예산액)
안 제14조(법 앞의 평등 실현) 및 제16조(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제8조(차별금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8.01억원) 장애인차별금지연구(5.15억원)
안 제20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및 제94조(참정권 보장)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회적 약자 투표편의 제공(26.58억원)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등 지원(0.61억원)
안 제24조(정보접근권 및 의사소통의 보장) 및 제96조(정보접근 권리 보장)	제22조(정보에의 접근)	[교육부]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45.5억원)
안 제30조(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여성장애인지원사업(25.44억원)
안 제31조(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	장애아동가족지원(1,940.47억원)
안 제32조(장애노인의 권리 보장)	—	장애인연금(8,931.5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통한 돌봄 지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현행 주요 사업(2024년 예산액)
안 제33조(훈련 및 재활의 보장)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지원(50.01억원)
안 제84조(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건복지부] 장애수당(기초)(1,506.33억원) 장애수당(차상위 등)(684.18억원) 장애인연금(8,931.57억원)
안 제85조(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제27조(주택 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1.92억원)
안 제86조(노동권 보장)	제21조(직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2,226.95억원)
안 제87조(자립생활 권리 보장)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94.32억원)
안 제88조(건강권 보장)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358.68억원)
안 제92조(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및 안 제25조(이동권)	제23조(편의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9.89억원)
안 제93조(교육권 보장)	제20조(교육)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167.74억원)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202.48억원)
안 제99조(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등)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문화체육관광부] 함께누리 지원(291.07억원)
안 제100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63.91 억원) 무장애 관광동시 조성(25억원)
안 제101조(체육활동 권리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단체 육성지원(375.94 억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285.75억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444.87억원)
안 제103조(장애인의 재생산권리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22년부터 지방이양)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II-1)」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안 제3조는 “장애인”의 범위를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정의한 범위보다 확대하고 있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될 사람의 수와 지원의 종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

□ 이하의 조항에 관하여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34조) 국가가 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인 분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 산출할 통계의 종류와 주기, 정보 수집 및 처리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안 제44조) 국가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장애연구원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44조제3항은 연구원의 사업과 활동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 시행 이후 두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국가장애연구원으로 이관될 기존 사업과 신규로 추진될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46조) 국가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46조제2항은 특별기금의 재원·용도·운용·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 여부와 그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5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수시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신고 전화(1644-8295)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신고 전화의 개편 또는 신규 전화 도입 여부 등을 추정하기 곤란

- (안 제52조·제72조) 현행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센터’로 명명)과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영역을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과 권리침해피해장애인 보호로 확대·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될 기관의 규모 및 사업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리침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개편 또는 신규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추정하기 곤란
- (안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인식제고 조치를 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며, 정규교육과정 및 인권교육·홍보에 장애인 권리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8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의견,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추가 인력 규모, 서비스결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가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88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비용의 대상 및 비용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90조) 기상청장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쟁, 국지전, 생화학테러 등의 전시 상황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

점에서는 해당 계획의 내용 및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9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장애인 등에 대한 발견·복귀,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장이 실종장애인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추진할 사업의 내용과 실종장애인 담당인력 배치 규모 및 국비·지방비를 통한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안 제94조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조력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음
- (안 제10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를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사회적 지원과 권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10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동 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신규 사업 추진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안 제3조·제6조·제11조·제40조·제105조)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운영(안 제3조·제6조)

-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의 사무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국가장애인위원회 민간위원 대표 1인과 정부위원 대표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 대표 1인과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 사무처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여 운영 중
 -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위원회 및 사무처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중
 - 국가장애인위원회의 민간위원 대표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와 사무처의 인적 구성 및 운영비 소요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 국가장애인위원회의 민간위원 대표와 상임위원 간 인건비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단가를 차등 설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모두 인건비 단가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 다만, 인건비 내에 포함되는 가족수당과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인원수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표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건비 단가 등 현황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예산액	비고
상임위원(1인) 인건비 단가	○ 봉급: 11,475천원×12개월 ○ 정액급식비: 14만원×12개월 ○ 직급보조비: 95만원 ×12개월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별도 발생*)	국가장애인위원회의 민간위원 대표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로 활용
사무기구 인적 구성 및 1인당 인건비 단가	(1) 전문임기제 가급(2인) ○ 봉급: 6,941,116원×12개월 ○ 정액급식비: 14만원×12개월 ○ 직급보조비: 40만원 ×12개월 (2) 전문임기제 나급(3인) ○ 봉급: 5,350,853원×12개월 ○ 정액급식비: 14만원×12개월 ○ 직급보조비: 25만원 ×12개월 (3) 전문임기제 다급(2인) ○ 봉급: 4,948,768원×12개월 ○ 정액급식비: 14만원×12개월 ○ 직급보조비: 16.5만원 ×12개월 ※ 전문임기제의 경우 공무원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국가부담금 별도 발생*) (4) 공무원(6인) ○ 봉급: 2,297,540원×12개월 ○ 정액급식비: 14만원×12개월 ○ 명절휴가비: 봉급×60%×2개월 ※ 공무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국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별도 발생	국가장애인위원회 사무처 인적 구성 및 인건비 지원 단가로 활용
사무기구 운영비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제외 23억 8,800만원	국가장애인위원회 운영비 지원 단가로 활용

주: 실제 예산서에는 가족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전문임기제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주계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표에 제시하지 않음

*) 국가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민간위원이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전문임기제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동시에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추계기간 사회보험 국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부담요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인건비(봉급)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보수 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¹⁾

- 단,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그 사무처를 설치·운영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92억 2,200만원(연평균 38억 4,400만원)으로 추계

[표 6]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A)	1,198	1,221	1,243	1,267	1,290	6,219	1,244
운영비(B)	2,494	2,547	2,600	2,655	2,708	13,003	2,601
추가재정소요(A+B)	3,693	3,767	3,843	3,921	3,998	19,222	3,8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애영향평가 실시(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비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여성가족부의 유관 사례의 사업 추진 구조와 지원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영향평가 자문 업무를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위탁하고 있음
 - 2024년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발굴 및 심층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5억 9,700만원(전년동)이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과제관리 및 이행점검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4억 4,400만원(전년동)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3.29.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상승률(%)	1.9	1.9	1.9	1.9	1.9	1.9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2.0

- 안 제36조제3항은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제 장애영향평가의 추진 체계 및 평가 대상 사업의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결과,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2억 500만원(연평균 10억 4,100만원)으로 추계

[표 7]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영향평가 실시(안 제11조)	1,041	1,041	1,041	1,041	1,041	5,205	1,0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40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2020~2023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2020년과 2023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 (충청북도) 2020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소요재정 약 4천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소요재정 약 5,700만원)
-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단가는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사 연구용역 수행비의 평균값(4,900만원)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일회성 사업으로 간주하고, 제정안에 명시된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첫해부터 5년 주기로 신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억 3,300만원(연평균 1억 6,700만원)으로 추계

[표 8]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안 제40조)	833	-	-	-	-	833	1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돌봄·주간활동지원(안 제105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구체적인 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현행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되는 경우만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관련 통계가 부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정신건강현황」 자료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질병분류 기준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실인원 수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에 입원·외래 등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통계 수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정확한 정신질환자의 수로 보기 어렵고(해당 자료에서도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F코드에는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가 포함되므로 발달장애인과 배타적인 분류로 보기 어려움

-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므로, 현행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상자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서 해당 연령대의 전체 장애아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
 - 2024년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액 831억 4천만원²⁾을 기준으로 2023년 청소년발달장애인 수(4만 3,728명) 대비 그 외 청소년장애인 수(3만 9,816명)의 비율인 91.1%를 적용하여 2024년 기준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후, 여기에 2021~2023년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청소년장애인(6세 이상 18세 미만) 수의 증가율(8.6%)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추계결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돌봄지원을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313억 3,300만원(연평균 1,062억 6,600만원)으로 추계

[표 9] 장애아동 돌봄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아동 돌봄지원 (안 제105조)	89,407	97,138	105,539	114,665	124,581	531,330	106,2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 예산액 557억 400만원에 예산서상의 평균 국고보조율 67%를 적용한 국비·지방비 합산 기준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